

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인구감소, 저성장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고, 운영할 수 있게 도시유형,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인구조정 범위 확대, 용도별 수요량 산출방법 개선 및 특례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유형 개편(안 3-1-2, 3-1-3, 3-2-3.(2), 3-2-4.(1), 4-4-3.(3), 별첨 6)
도시유형을 인구 추세, 도시 위상에 따라 분류하고, 도시 위상별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되, 광역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하

거나,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나.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(안 4-2-5)

계획인구 추정을 통계청 장래인구를 활용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, 주간활동인구는 통계자료, 교통·통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

다. 생활권 인구조정 범위 확대(안 4-3-2.(2))

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생활권간 인구조정 범위를 확대 기존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함

라. 용도별 수요량 산출방법 개선(안 4-3-1, 4-4-2, 4-4-3.(2))

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용지, 도시개발사업,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수요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마. 특례규정 신설(안 6-2)

연구개발 실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바. 도시기본구상도 개편(안 4-4-3.(4)·(5), 별첨 2~4)

수립 시점의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구상도를 목표연도의 공간구조를 표현하도록 개선

사. 기타(안 2-1-2, 3-1-1.(4), 4-2-5.(4), 4-3-2.(1), 4-4-6, 4-5-3.(2), 4-11-1, 5-1-2, 5-1-8)

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

3. 의견제출

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- 팩스 : 044-201-5569
- 전자우편 : ganjones72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> 법령정보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044-201-37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